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208호

다. 제출일자 : 2016. 5. 30.

라. 회부일자 : 2016. 5. 31.

2. 제안사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종사원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정규직으로 고용 추진하기 위하여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등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업무 위탁방법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을 추가(안 제4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신설·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부패유발 우려 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6. 3. 31 ~ 4. 20) 결과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계량기 점검 및 교체 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 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종사원을 서울특별시 시설 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고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이는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입법 예고안	시설관리공단 제출안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	① 시장은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u>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전부를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u>	고 인정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
	<u>할 수 있다.</u>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에서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는 단순위탁 대상으로 구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의안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수도조례에 "동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의견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결국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5년 주기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u>단순위탁</u>: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ㆍ처리, <u>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u> 발급ㆍ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 2. 복합위탁: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u>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u>,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 6.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 사사무소
-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